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례 · 규칙안 상정

(총 1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7 ~ 40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 ~ 4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07 ~ 4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7 ~ 43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07 ~ 44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07 ~ 45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07 ~ 46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07 ~ 47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07 ~ 48	거창군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07 ~ 49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2007 ~ 50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2007 ~ 51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2007 ~ 52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8
2007 ~ 53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5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40
----------	-----------

제출연월일	2007.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06.12.30) 및 공유재산 관리기준(행정자치부, 2007. 3. 9)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안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나. 제32조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안 제32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
- 다. 제39조제1항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변경(안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변경
- 라.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안 제40조)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
 -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
 -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음.
 -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 마. 분수림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안 제44조)
- 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안 제64조)
 - 총보상금 :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 보상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으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7조, 제84조
「공유재산관리기준」(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7. 9.10. ~ 9.30.)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한다.

제2조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 이 있는 토지”를 “군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를 필한 건물”로,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 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를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명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관리책임) ① <u>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p> <p>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u>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명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u>군</u>----- ----- ----- ----- -----.</p> <p>제2조(관리책임) ① <u>군수</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분수립의 설정)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u>1,000만원</u>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2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p> <p>가. ~ 나. (생략)</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1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 ----<u>3,000만원</u>-----.</p> <p>1. ----- -----<u>600만원</u>-----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 ----- <u>300만원</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41
----------	----------

제출연월일	2007.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온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시키며,
- 특히,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라.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바.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4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3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9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2)입법예고(2007.10.9 ~ 10.29)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 ②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

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5조(지방채 발행)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과장을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 산업단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42
----------	-----------

제출연월일	2007.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율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칭을 띄어쓰기함(안 제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 나.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함(안 제34조)
 - 100분의 5 ⇒ 100분의 3
- 다. 부적합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제14조제3항제19조제25조제3항제30조 본문제34조제42조제1항)
 - 의하여 ⇒ 따라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날로부터 ⇒ 날부터
 - 기타 ⇒ 그 밖에 (안 제1조제6조제5항제3호·제19조제9호·제30조 제3호·제39조제4항제2호·제42조제1항제12호·제45조제47조제2항)
 - 법령명에 낫표(「)사용 (안 제1조제39조제1항제4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07. 9. 6. ~ 9. 27.) : 의견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를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거창군”을 “**군**”으로,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제19조제9호·제30조제3호·제39조제4항제2호·제42조제1항제12호·제45조·제4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9조·제25조제3항·제30조 본문·제4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4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6조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u>군</u>----- ----- -----<u>그 밖에</u> -----.</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거창군의 관할구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u>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p>	<p>제3조(급수구역) ----- <u>군</u>----- -----<u>군수</u>----- ----- -----.</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기타</u>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생략) ③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u>각 호의 어느 하나</u>-----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중수도 설치대상 및 확인) ① <u>수도법시행령</u>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1일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말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u>기타</u> 배관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3. ~ 4. (생략)</p> <p>⑤ (생략)</p>	<p>제39조(중수도 설치대상 및 확인) ① 「<u>수도법 시행령</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에</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 <u>군수</u>는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12. <u>기타</u>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p> <p>② (생략)</p>	<p>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5조(과태료) 사기, <u>기타</u>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에 과한다.</p>	<p>제45조(과태료) --- <u>그 밖에</u> ----- ----- -----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u>수도법</u> 제 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u>수도법</u>」 ----- ----- ----- -----.</p>
<p>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생 략)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u>기</u> <u>타</u>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그</u> <u>밖에</u> ----- ----- ----- --.</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 43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3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54조 → 제62조(안 제1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62조에 따라</u>----- ----- ----- -----</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 임기간으로</u> 한다.</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남은 임기로</u> -----</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44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4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36조 → 제41조 (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 제52조 (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 제104조제2항, 제104조 내지 제107조 →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08조 및 제111조 → 제117조 및 제120조 (안 제5조)

3) 「지방자치법」 제36제3항 → 제41조제3항(안 제6조)

4) 「지방자치법」 제36제4항 → 제41조제4항(안 제9조, 제9조의3)

제36제5항 → 제41조제5항(안 제9조)

5) 「지방자치법」 제37제2항 → 제42조제2항(안 제9조의2)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제7조)

2) oo의 규정에 의한 → oo에 따른(안 제1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제104조, 제113조부터 제117조, 제120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 ----- ----- -----</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생략) 4.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략) ②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3항-----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형사소송법」----- -----</p>

현행	개정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형사소송법」-----</p>
<p>제9조의2(대리 출석 답변 등)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대리 출석 답변 등) -----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p> <p>-----</p> <p>-----</p> <p>-----</p> <p>-----</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생략)</p> <p>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p> <p>-----</p> <p>-----</p> <p>-----</p>
<p>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p> <p>제12조에 따른 -----</p> <p>----- 제13조에 따른 -----</p> <p>-----</p> <p>거창군의회 회의 규칙-----</p> <p>-----</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45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5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7조 → 제42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 제113조부터 제116조(안 제2조제3항)
- 3) 「지방자치법」 제108조 → 제117조(안 제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u>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p>	<p>제명 <u>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 ----- -----</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u> 소속 행정기관장 4. (생략) 5. <u>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u> 하부행정기관의 장 	<p>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u>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17조에 따른</u>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의안번호	제 46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6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3조(안 제1조)
- 2)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1) 월정수당 월 1,416,000원 → 2,130,18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월 1,416,000원”을 “월 2,130,180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 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 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30	145	81	130	155	18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32조</u> 및 동법시행령 <u>제15조의</u>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3조</u>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u> ----- ----- ----- -----</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생략)</p> <p>② 월정수당은 <u>월 1,416,000원</u>으로 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월 2,130,180원</u>-----</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안번호	제 47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7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82조·제83조 → 제90조·제91조(안 제1조)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00의 규정에 의하여 → 00에 따라(안 제1조)

3) 00의 규정에 의한 → 00에 따른(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u>	제명 <u>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90조와 <u>제91조에 따라</u> ----- ----- ----- ----- -----
제4조(전문위원) ① ~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전문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u>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48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8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 제134조제3항(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47조 →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56조 → 제64조 (안 제3조)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 → 제84조제3항 (안 제9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

1) oo조의 규정에 의한 → oo조에 따른

2) oo조의 규정에 의한다 → oo조에 따른다

3)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조에 따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34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제83조·제8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u>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u> -----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에 의한</u>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u>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u>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u>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에 따른</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64조에 따른다</u> ④ ----- <u>별지 서식에 따른</u> -----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 ② 「지방공기업법」 <u>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u>제35조의 규정에 의한</u>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같음한다.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2조에 따라</u> ----- ----- <u>제35조에 따른</u> ----- ---
제9조(감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u>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감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u>제84조제3항에</u> ----- ----- ----- ----- -----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u>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 (생략)</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u>제4조에 따른</u> ----- ----- --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일비의 지급은 <u>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u>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u>제10조에 따른</u> ----- ----- <u>제4조제2항에 따른</u> ----- ----- ----- ----- ----- ----- ② ----- ----- <u>제12조에 따른</u>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의안번호	제 49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9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1)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 제34조(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 제35조(안 제1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제33조 (안 제2조)

나.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

1) oo조의 규정에 의한 → oo조에 따른

2)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조에 따라

3)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직무“라 함은” 을 “ “직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율” 을 “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유족“이라 함은” 을 “ “유족“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장애“라 함은” 을 “ “장애“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상해“라 함은” 을 “ “상해“란” 으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장애”란 ----- ----- ----- -----</p> <p>② ----- “상해”란 ----- ----- -----</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p> <p>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제10조(심의회 기능) ----- 각 호 ----- ----- -----</p> <p>1. ~ 4.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50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화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0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 제44조·제45조·제47조(안 제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 제54조 (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118조 → 제127조 , 제125조 → 제134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127조, 제134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u>제38조·제39조·제41조</u>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44조·제45조·제47조</u>----- ----- <u>제54조에 따라</u>----- ----- ----- ----- -----</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u>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u>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 <u>법 제134조에 따른</u>----- ----- ----- ② ----- <u>법 제127조에 따른</u>----- ----- ----- ③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 51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살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1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 제38조(안 제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한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38조에 따른----- ----- ----- -----</p>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52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52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63조 → 제71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 제63조제1항 (안 제14조)
- 3) 「지방자치법」 제71조 → 제79조 (안 제70조)
- 4) 「지방자치법」 제78조 → 제86조 (안 제82조)

나.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2항).

다. 군정질문의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을 변경하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제71조, 제79조, 제8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4항 중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71조 ----- ----- ----- -----</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p>	<p>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인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79조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⑤ (생략)</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제86조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53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53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 제60조(안 제1조)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제10조)

 2)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제5조)

 3) oo의 규정에 의한 → oo에 따른(안 제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 <u>60조에 따라</u>----- ----- ----- -----</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u>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u>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의신청) ① ----- <u>제4조제3호에 따라</u> ----- ----- -----</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 ----- <u>제6조제3항에 따른</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p> <p>1. ~ 3. (생략)</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u>제9조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u>제9조에 따른</u> ----- ----- 「<u>지방자치법</u>」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